

NEWSLETTER

August 2020

조세 그룹
Tax Group

CONTACT



변호사 마옥현

T: 02.6386.6280
E: okhyun.ma@leeko.com

변호사 김경태

T: 02.772.4414
E: kyungtae.kim@leeko.com

전문위원 김해철

T: 02.772.4354
E: haichoul.kim@leeko.com

공인회계사 장연호

T: 02.772.5942
E: yeonho.chang@leeko.com

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

행정안전부는 2020.8.12. 「2021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」을 확정·발표하였습니다.

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, 코로나 19사태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 사태 피해극복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·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, 서민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연장을 통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며,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하고, 납세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.

금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요내용

- 기간 계속적인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었던 법인의 외국납세액공제와 관련 하여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 (지방세법 제103조의19)
- 지방세 심판사건의 심도 있는 심리 및 결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동회의 대상 규정 신설 (지방세기본법 제96조)
 - * 합동회의 대상
 - ① 행안부장관이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
 - ②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·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
- 기간 실무상 혼란이 있어 계속적으로 다툼이 발생하던 자율주행, 신재생에너지 차량 등 R&D 미등록대상 차량에 대한 차량 취득세율을 2%로 명확화 조정(지방세법 제12조)
-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로 하면서 아래 사유가 있고 납세자 동의시, 부분 세무 조사 결과통지 허용(지방세 기본법 제85조)
 - 국외자료 수집·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 진행
 - 세법해석·사실관계 확정 위해 행안부장관과 질의절차 진행

- 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 조정에 따라 10억원 초과 소득은 4.5%로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(지방세법 제92조)
- 담배간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하던 것을 1,256원으로 세율 조정(지방세법 제52조)
-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사업자·법인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(지방교육세 포함) 신설하면서 납기를 8월로 조정(지방세법 제74조 등)

※ (사업소분) 기본세액 5만원(법인은 5~20만원) + 250원/㎡

- 현행 법령에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대상을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비과세·감면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거나 추징하는 경우 과세예고 대상으로 규정(지방세기본법 제88조)
- 연대납세의무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신설하면서 적용 시점은 분할등기일로 명확화 (지방세기본법 제44조)
-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경정·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 인정 규정 신설(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)
-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준 불명확하여 과세관청과 다툼이 잦았던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근거 마련(지방세법 제103조의3)
- 전공대학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,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限)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(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)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100% 감면(최소납부제 적용)(지특법 제44조)
-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 및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(취득세 5~10%감면) 감면 신설(지특법 제47조의4)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신규로 구축한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50% 감면 규정 신설(지특법 제49조의2)
-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,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(지방세기본법 제42조)
-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[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안 입법예고.pdf](#)

■ 주요 구성원

조세징송

이상기 변호사
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
한국조세협회 부이사장
Tel: 02-2191-3005
Mail: sangkie.lee@leeko.com

이인형 변호사
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
Tel: 02-772-5990
Mail: inhyung.lee2@leeko.com

손병준 변호사
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
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
Tel: 02-772-4420
Mail: byeongjun.son@leeko.com

마옥현 변호사
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
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
Tel: 02-6386-6280
Mail: okhyun.ma@leeko.com

김성환 변호사
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(총괄)
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
Tel: 02-6386-7900
Mail: sunghwan.kim@leeko.com

김경태 변호사
대전지방법원 판사
한국세무학회 부회회장
Tel: 02-772-4414
Mail: kyungtae.kim@leeko.com

박영욱 변호사
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
위원
변호사시험(조세법) 출제위원
Tel: 02-722-4422
Mail: yonguk.park@leeko.com

임수혁 변호사
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
미국 UC Berkeley School of
Law 법학석사(LLM)
Tel: 02-772-4973
Mail: soohyuk.yim@leeko.com

조세자문

김상훈 변호사
한국지방세연구원
지방세구제업무 자문위원
중부세무서 국제심사위원회
위원
Tel: 02-772-4425
Mail: sanghoon.kim@leeko.com

장연호 회계사
국세청 금융업 실무과정 강사
삼일회계법인
금융/보정조세팀 근무
(한국-미국 등록 회계사)
Tel: 02-772-5942
Mail: yeonho.chang@leeko.com

이인수 회계사
김·장 법률사무소
삼일회계법인
Tel: 02-6386-7905
Mail: insu.lee@leeko.com

정재훈 회계사
신한금융지주
삼일회계법인
Tel: 02-772-5931
Mail: jaehun.jeong@leeko.com

조세예규 및 행정심판

강지현 변호사
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
사무관
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
(조세특례제도과)
Tel: 02-772-4975
Mail: jihyun.kang@leeko.com

김병준 세무사
조세심판원 조정팀장
국세청 심사과
Tel: 02-6386-6376
Mail: byungjun.kim@leeko.com

국제조세

심재진 미국변호사
AmCham Tax Committee
Co-Chair
PwC Moscowand Price
Waterhouse, New York
Tel: 02-2191-3235
Mail: jay.shim@leeko.com

류성현 변호사
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
위원
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
Tel: 02-2191-3251
Mail: sunghyun.ryu@leeko.com

이환구 변호사
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
UCLA Law School
LLM(Tax track)
Tel: 02-772-4307
Mail: hoanku.lee@leeko.com

오혁 미국변호사
미국 RSM International
Inc., International Tax
미국 Deloitte Tax LLP,
Washington National Tax
Tel: 02-772-4349
Mail: steve.oh@leeko.com

권오혁 미국변호사
Deloitte Anjin LLC
Deloitte Tax LLP
Tel: 02-6386-6627
Mail: tom.kwon@leeko.com

인병춘 회계사
KPMG 국제조세본부장
KPMG Tax Partner
Tel: 02-6386-7844
Mail: byungchoon.ihn@leeko.com

김태경 회계사
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
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
Tel: 02-2191-3246
Mail: ted.kim@leeko.com

박성현 미국회계사
EY연영회계법인
삼일회계법인
Tel: 02-6386-7952

세무조사 지원

조태복 세무사
성동, 중부산 세무서장
국세청 법인세과, 법령해석과
Tel: 02-6386-6572
Mail: taibog.cho@leeko.com

장순남 세무사
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
서기관
국세청 조사국 사무관
Tel: 02-772-5928
Mail: soonam.jang@leeko.com

이호태 세무사
중부지방국세청
국세청
Tel: 02-6386-6602
Mail: hotae.lee@leeko.com

배인수 세무사
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
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
Tel: 02-772-5986
Mail: insoo.bae@leeko.com

관세

박영기 변호사
관세청 통관지원국 사무관
서울본부세관 고문변호사
Tel: 02-2191-3052
Mail: yonggee.park@leeko.com

대정욱 변호사
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
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
Tel: 02-6386-6373
Mail: jungwook.tae@leeko.com

지방세

김해철 전문위원
행정안전부 지방세특별재제도과
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
전문상담위원
Tel: 02-772-4354
Mail: haicheul.kim@leeko.com

고문

정병춘 고문
국세청 차장
광주지방국세청장
Tel: 02-722-4757
Mail: byungchoon.chung@leeko.com

윤영선 고문
제24대 관세청장
기획재정부 세제실장
Tel: 02-6386-6640
Mail: youngsun.yoon@leeko.com

원정희 고문
부산지방국세청장
국세청 조사국장
Tel: 02-772-5942
Mail: junghee.won@leeko.com

김재웅 고문
서울지방국세청장
중부지방국세청장
Tel: 02-6386-7890
Mail: jaiwoung.kim@leeko.com

형사

유재만 변호사
대검찰청 중수1,2과장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특수1,2,3부장
Tel: 02-772-5980
Mail: jaeman.yu@leeko.com

감사원

이세열 고문
감사원 심사담당과장
감사원 조세담당국
인사운영팀장
Tel: 02-6386-7840
Mail: seyoul.lee@leeko.com

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[상단 연락처로 연락](#)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법무법인(유)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[\[수신거부\]](#)를 클릭해 주십시오.